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764호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62호, 2013.4.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 일부 개정안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으로 한다.

1.2 (4) 중 “정거장설계시”를 “정거장 설계 시”로 한다.

1.3 (1) 중 “농일”을 “높일”로 한다.

1.3 (6) 중 “정거장로”를 “정거장으로”로 한다.

1.3 (17) 중 “보행자수(인/m·sec로 표시)”를 “보행자 수[명/(m·초)로 표시]”로 한다.

1.3 (25) 중 “열차를 말한다”를 “열차”로 한다.

1.3 (31) 중 “도시철도, 기차”를 “광역·도시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로 한다.

1.3 (33) 중 “(인/m·sec로 표시)”를 “[명/(m·초)로 표시]”로 한다.

1.3 (34) 중 “대기행렬은 톨게이트”를 “톨게이트”로, 후단의 “발생하는 현상으로, Queue 시뮬레이션이란 대기행렬이 발생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지체가 수반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절감하기 위해서”를 “대기행렬이 발생하므로 대기행렬로 인한 지체가 발생하면, 이러한 지체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로 한다.

1.4.1 (9) 중 “용인경량전철”을 “용인 경량전철”로 한다.

2.1.2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이용객의 방향 인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역사내, 승강장, 대합실, 통로 등 주요지점의 안내표지에는 해당 역사의 인접역사 및 통과노선의 주요역사에 대한 방위(동, 서, 남, 북)를 병행 표시하되, 방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방위를 표시한다.

2.2.1 (2) 중 “D”를 “D 이상”으로, “E로”를 “E 이상으로”로 한다.

3.3.1.1 (1) 1) 중 “기능실을 가급적 억제하여 원활한 동선을 확보하고”를 “원활한 동선을 확보하고”로 하고, 4) 중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을 “승강장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으로 한다.

3.3.1.2 (4)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재 및 피난 설비가 설치될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3.1.2 (8)의 (나)와 (다)를 (나)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이용객은 승강장을 따라서 일정하게 분배되지는 않으며, 가장 붐비는 부분에서는 승강장 이용객수의 35%가 승강장의 25%를 점유한다고 본다.

3.3.1.2 (8)의 “(라)”를 “(다)”로 하고, “(마)”를 “(라)”로 한다.

3.3.1.2 (8) 중 “상기 가정을”을 “2) 상기 가정을”로 한다.

3.3.1.2 (8) 2)를 3)으로 한다.

3.3.1.2 (9) 2)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cm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10cm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경고 및 안전장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4.1.1 (3)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계단석의 크기는 일반계단은 W330mm × H165mm를 표준으로 하며, E/S와의 병행계단은 설치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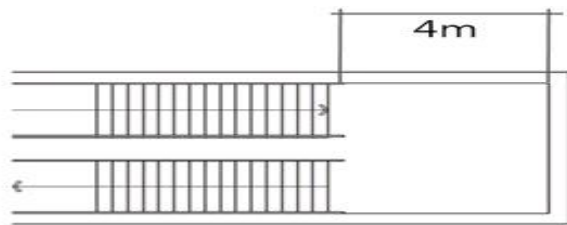
3.4.1.1의 2)를 3)으로 한다.

3.4.1.2 (1)을 삭제하고, (2)를 (1)로 한다.

3.4.1.2 (2)의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계단사이에 E/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 계단간 간격을 15m 이상 둔다. 다만, 기존 정거장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4.1.2 (2) 6) ⑤의 하단의 두 번째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계단과 계단을 병렬로 연결하는 경우 >

3.4.1.2 (3)을 (2)로 한다.

3.4.2.1 (1) 5) 중 “1.5m”을 “2.0m”로 하고,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존 외부계단(출입구)를 개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4.2.1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설치기준

- 1) 계단석의 크기는 일반계단은 W330 mm × H165 mm를 표준으로 하며, E/S와의 병행계단은 설치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 2) 눈 또는 비로 인하여 승객이 출입구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눈·비 차단시설을 설치한다.
- 3) 약시자의 계단부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시·종점부 계단코를 특수색깔 처리한다.

3.4.2.2 (1)을 삭제하고, (2)를 (1)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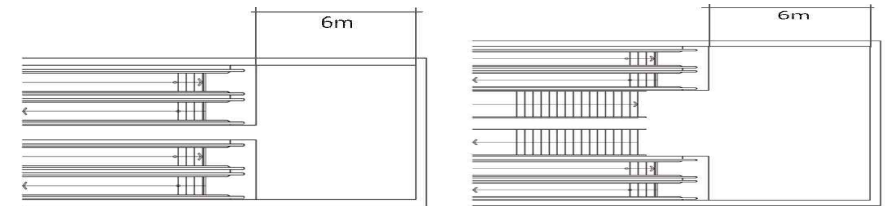
3.4.3.2 (1) 2) 가) 중 “1인용”을 “디딤판의 폭이 580mm 이상인”으로 한다.

3.4.3.2 (1) 2) 나) 중 “2인용”을 “디딤판의 폭이 980mm 이상인”으로 한다.

3.4.3.2 (1) 2)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5.0m ≤ 통로폭인 경우, 디딤판의 폭이 980mm 이상인 E/S를 상·하행 설치하고 계단의 폭은 1.5m 이상으로 한다.

3.4.3.2 (1) 3)의 (바)의 하단에 다음 그림을 신설한다.



<E/S와 E/S을 병렬로 연결하는 경우> <E/S와 계단이 병행 설치된 경우>

3.4.3.2 (2) 1) 중 “유효폭은 1,200mm”를 “디딤판의 폭은 980mm”로,

“800mm이상”을 “580mm 이상”으로 한다.

3.4.3.2 (2) 2) 중 “40m/분으로 하며”를 “40m/분 이하로 하며”로, “30m/분으로”를 “30m/분 이하로”로 한다.

3.4.3.2 (2) 5) 중 “설치하거나”를 “설치하고”로 한다.

3.4.4.1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승강기 규격은 15인승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장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규격 이상으로 한다.

3.4.4.2 (2) 2)를 삭제한다.

3.4.4.2 (3) 1) 중 “동일한 수준의 높이”를 “동일한 높이”로 한다.

3.4.5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승통로의 직선부분 길이가 50m 이상일 때는 M/W를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3.4.5 (3) 중 “유효폭은 1,200mm”를 “디딤판의 폭은 980mm”로, “800mm이상”을 “580mm 이상”으로 한다.

3.6.4.1 (2) 2) (다) ①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조기계실은 정거장의 공간구조에 따라 양끝단 분리배치, 중앙배치, 층별 분리배치 등으로 위치를 선정할 수 있으며, 반송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거장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3.6.4.1 (2) 2) (다) ② 중 “층고”를 “높이”로 한다.

3.6.4.1 (2) 2) (라)의 “가급적 공조기계실에 근접”을 “공조기계실의 내부에 두거나 공조기계실에 인접”으로 한다.

3.6.5.1 (6)을 삭제한다.

3.6.6.2 (1) 2) (가) 중 “2단(330mm)”을 “2단 이상(330mm)”으로 한다.

3.6.6.2 (1) 2) (다) 중 “보도면에서 1m로”를 “예상침수높이를 감안하여 보도면에서 1.0m 이상으로”로 한다.

3.6.6.2 (3) 1) 중 “환기덕트”를 “환기구”로, “돌출형의 설치가”를 “1.0m 이상 돌출이”로 한다.

3.6.6.2 (3) 2) 중 “환기덕트”를 “환기구”로 한다.

3.6.6.2 (5) 2) (나) 중 “400%”를 “400%의 용량을”으로, “100%이상”을 “100% 이상”으로 한다.

3.7.2.6 (6) 중 “외부계단(출입구)”를 “보도↔외부계단(출입구)”로 한다.

3.7.2.6 (9) 중 “계단 근처”를 “계단 및 E/V 근처”로 한다.

3.7.2.9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자동문이 설치된 화장실의 출입문 스위치는 변기에 앉은 채 조작이 가능한 거리에 설치한다.

6.4.1 (6) 중 “D를” “D 이상”으로 한다.

6.4.2 (1) 4) 중 “1.5m”을 “2.0m”로 하고,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존 외부계단(출입구)를 개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4.2 (4) 1) (가) 중 “D를”을 “D 이상”으로 한다.

6.4.3 (1)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눈 또는 비로 인하여 승객이 출입구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눈·비 차단시설을 설치한다.

6.4.3 (3) 1) 중 “유효폭은 800형”을 “디딤판의 폭은 580mm”로 한다.

6.4.3 (3) 중 “2) 가능한한 방향전환이 가능한 가변형 E/S를 사용하도록 한

다.”를 “3) 가능한한 방향전환이 가능한 가변형 E/S를 사용하도록 한다.”로 하고, “2) 시·중점부의 디딤판은 3매 이상 수평이 되도록 한다.”를 “4) 시·중점부의 디딤판은 3매 이상 수평이 되도록 한다.”로 한다.

6.4.4 (2) 중 “1.5m”를 ”2.0 m”로 한다.

9.1 중 “2013년 10월 7일”을 “2016년 10월 7일”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